

번호	변경일	변경내용	확인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
유의사항
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된 비파괴검사방법에 한하여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(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및 별표 1).
2. 상호·대표자·소재지 또는 검사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3.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(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3호).
4.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,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(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8호).
5.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).